

#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실시 안내

사법연수원은 실무능력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법조인 양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의 2021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, 2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.

## 1. 실무수습 시간 및 실시시기

가. 실무수습 시간 : 총 80시간으로 운영

- 사전강의 1일 8시간씩 2일(16시간) + 실무수습 1일 8시간씩 8일(64시간)

나. 실시시기

- 연수원 사전강의 : (1차) 2021. 7. 5.(월) ~ 7. 6.(화)  
(2차) 2021. 8. 9.(월) ~ 8. 10.(화)
- 법원별 실무수습 : (1차) 2021. 7. 7.(수) ~ 7. 16.(금)  
(2차) 2021. 8. 11.(수) ~ 8. 20.(금)

다.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~3차 중 하나의 과정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고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음(참고로 기본과정 3차는 동계 방학기간 중 실시하고, 추후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임)

## 2. 연수원 사전강의

가. 단기간의 실무수습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실무수습에 필요한 기본사항 및 실무과목(민·형사 절차론 등)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질 예정임

나. 실무수습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강하여야 함

다. 구체적인 강의시간 및 강의내용 : 추후 공지 예정

라. 장소 : 각 법원 내 정해진 장소(사법연수원 강의를 송출할 예정임)

## 3. 법원별 실무수습

가.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재하는 지역의 각 지방법원 및 지원

- 서울중앙지법, 서울동부지법, 서울남부지법, 서울북부지법, 서울서부

지법(1차만 실시), 의정부지법, 인천지법, 수원지법, 춘천지법, 고양지원(1차만 실시), 부천지원, 성남지원, 안산지원, 안양지원<sup>1)</sup>

- 대전지법, 청주지법
- 대구지법
- 부산지법, 울산지법, 창원지법
- 광주지법, 전주지법, 제주지법, 군산지원

나. 해당 법원의 규모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수습이 곤란할 경우에는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하여 인근 지역의 법원으로 배정함

#### 4. 실무수습 지원자격

가.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1학기 이상 이수자(2021. 6. 이수예정자 포함) 중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실무수습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된 자 [별지1 「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」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배정 인원의 범위 내에서]

나. 코로나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취소된 2020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 지원자 중 2021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1, 2차 희망자 [별지2 「2020년도 기본과정 3차 지원자 중 2021년도 기본과정 1, 2차 희망자 명단」 기재와 같음, 이하 약칭하여 ‘2020년도 기본과정 3차 지원자’라 함]

다. 위 나.항의 인원은 위 가.항의 각 법학전문대학원별 배정 인원과는 별도로임

※ 2020년도 기본과정 3차 지원자(기본과정 1, 2차 희망자 22명)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법원실무수습 기회 보장(취소된 2020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 지원자 중 ‘2021년도 법원실무수습 기본과정 3차 및 심화과정 희망자’에 대하여도 추후 동일한 방식으로 우선권을 부여할 예정)

#### 5. 실무수습 인원

가. 수습인원 : 약 384명[1차 : 201명(그 중 17명이 2020년도 기본과정 3차 지원자), 2차 : 183명(그 중 5명이 2020년도 기본과정 3차 지원

1) 즉, 서울서부지법, 고양지원은 기본과정 1차만 실시하고, 그 외 지법 및 지원은 기본과정 1차 및 2차를 모두 실시함

자),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고려]

나.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 할당 방법

-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균등하게 실무수습 기회를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
-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의 상한은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과 법학전문대학원 전체 정원 대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비율을 고려함

다. 이번에 실시되는 실무수습 기본과정의 진행상황과 성과, 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생의 수습태도나 능력, 실무수습 신청 철회 등을 이후의 실무수습 총 인원 및 법학전문대학원별 수습인원을 정할 때 반영할 수 있음

※ 실무수습 신청에 대한 철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고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습 법원 배정 공고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체적 사유와 함께 철회 의사를 밝혀야 함

6.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수습생 추천 및 실무수습생 선정

가.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실무수습지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 중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 추천

나.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반드시 별지1 「법학전문대학원별 실무수습 인원 상한표」의 배정 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하여야 함(다만, 별지2에 기재된 2020년도 기본과정 3차 지원자에 대하여는 ‘위 배정 인원과 별도로’ 추천하는 것으로 반드시 추천하여야 함)

다. 각 법학전문대학원은 동일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을 1차 및 2차(향후 3차)의 실무수습에 중복하여 추천할 수는 없음

라. 각 법학전문대학원이 실무수습 지원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추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한 해당 실무수습생 전원을 최종 실무수습생으로 선정할 예정임

7. 실무수습생의 각급 법원 배정

가. 실무수습생의 희망,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각급 법원(5개 고등법원의

-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함) 및 각급 법원의 수용가능 인원 등을 고려하  
 되, 법학전문대학원 소재지와 무관하게 배정할 수도 있음
- 나. 가급적 실무수습생의 희망을 반영하되, 수습신청이 특정 법원에 집중  
 될 경우 법학전문대학원별 균등한 인원 배정(실무수습생은 복수의 실  
 무수습 희망법원을 기재하여야 함, 아래 제10항의 해당 부분 참조)
- 다. 실무수습생 선정 및 각급 법원 배정 명단은 **2021. 6. 중순경** 법학전  
 문대학원협의회를 통하여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통지

※ 서울서부지법, 고양지원은 기본과정 1차만 실시하고, 2차는 실시하지 않  
 음에 유의

## 8. 실무수습 내용

- 가. 사전강의 : 위 제2항의 해당 부분 참조
- 나. 각급 법원에서의 실무수습
- 사법연수원에서 권장 수습항목 및 모델 프로그램 제시
  - 민사재판실무 :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, 민사조정 교육  
 및 참여 등
  - 형사재판실무 : 실제 사건 기록 검토 및 법정 방청 등
  - 지도관 부여 과제 등
- 다. 향후 수습인원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각급 법원에 배정함과 동시에  
 사전강의과목 및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을 안내할 예정임

## 9.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

- 가. 각 실무수습생별로 실무수습 담당법관(민사·형사지도관)을 지정하여  
 실무수습 지도와 평가를 수행하게 함
- 나. 평가결과를 각 법학전문대학원에 송부
- 다. 실무수습의 평가 자료는 법원의 법학전문대학원생 관련 각종 업무의  
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음